##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64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윤재옥·최수진·김정재

권영세 · 김기웅 · 이인선

김태호 · 김성원 · 김상훈

권영진 · 엄태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은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 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중 발생한 결함은 자동차정 비업소에서 수리토록 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 록 검사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그러나 최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미흡한 차량관리 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한 안 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주요장치에 대한 분해점검을 통해 차량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의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등).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조의2(자동차의 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용 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중량 이상의 특수 자동차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또는 차 량중량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② 제1항의 자동차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해당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제13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거짓으로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한 경우 제84조제4항제15호의4 및 제15호의5를 각각 제15호의5 및 제15호의6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 15호의5(종전의 제15호의4) 단서 중 "제15호의5"를 "제15호의6"으로 한다.

15의4.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6조의2(자동차의 점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일정한차령이 경과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중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중량이상의 특수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또는 차량중량이상의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② 제1항의 자동차 소유자는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해당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자동차를 정비하여야한다.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 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 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2호라목 (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12. (생략)
-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나. ~ 차. (생 략)
14. ~ 16. (생 략)
② ~ ⑥ (생 략)
제84조(과태료) ① ~ ③ (생 저략)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u>.</u>
1. ~ 12. (현행과 같음)
13
가. 거짓으로 제36조의2제1항
에 따른 정기점검을 한 경
<u></u> 수
- 나. ~ 차. (현행과 같음)
14. ~ 1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8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가스)
/ : I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5의3. (생 략) <u><신 설></u>
- 15의4.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u>제15호의5</u>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5의5. (생략)

16. ~ 24. (생 략)

⑤ · ⑥ (생 략)

<b>4</b>
,
1. ~ 15의3. (현행과 같음)
15의4.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15의5
<u>제15호의6</u>
<u>15의6.</u> (현행 제15호의5와 같
<u>이</u> )
16. ~ 24.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